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식재산처장의 기술적 검토의견 제공〉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86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의견	2
2. 추가적 검토사항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9.
3. 회부연월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의견

개정안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의2제1항), 의견 제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같은 조 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특정 지식·정보 또는 기술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지식·정보 또는 기술 간 동일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는 지식재산처가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 기술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지식재산처는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의 협조 규정¹⁾ 또는 개별 법령²⁾에 근거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의견 제출 요청이 오면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고 있음³⁾.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유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⁴⁾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책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지식재산처 의견 제공 제도는 보다 활성화·관

1)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자문 및 조사의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방첩업무 규정」 제4조(기관 간 협조) ①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식재산처는 정보·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및 해경) 및 행정조사기관(공정위, 무역위) 등을 대상으로 432건의 기술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함('25.12. 기준)

4) 최근 5년간('20~'24) 해외 기술유출 적발 105건, 유출시 피해액은 25조원대 추산(자료: 국가정보원)

례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임.

개정안과 같이 지식재산처의 의견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처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쟁점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의견을 제공하게 되면, 정보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해당 수사·조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특허·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⁵⁾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검토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영업비밀⁶⁾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의 검토의견을 제공하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발의·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제2215688호)

2. 추가적 검토사항

(1) ‘수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

안 제14조의2제1항 본문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식재산처가 특정 지식·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취지로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달리⁸⁾ 의견 제공 요청이 허용되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업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의 제안이유⁹⁾를 보면 주로 수사 또는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의 의견 제공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위임형식 상향 및 시행 유예기간 부여

안 제14조의2제2항은 지식재산처 의견 제공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제2215688호) 제14조의8(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제221568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식재산처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처 의견 제공 제도는 국가행정기관과 지식재산처 간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에 의견을 요청할 때 국가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 절차·방법도 직간접적으로 규율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으로 이를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지식재산처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할 여지가 있고,

행정기관 간 의견 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례¹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4조의2제2항도 지식재산처 고시보다 상급의 위임형식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위와 같이 위임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¹¹⁾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도

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자문 및 조사의뢰

11)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부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다. 한편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위임형식의 상향 필요성에 동의하고,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p.821, 2024]